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75호 2017. 1. 18.(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7-5호 거창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거창군 고시 제2017-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4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7-69호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공고 6
- 거창군 공고 제2017-7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5
- 거창군 공고 제2017-81호 산업단지 연결도로(변전소-정장마을간) 개설공사 27
- 거창군 공고 제2017-87호 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공고 및 준공검사 필증교부 37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고시 제2017-5호

거창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4-141(2014.12.11.)호로 최초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7. 1. 13.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사 업 기 간	최 초 결정일
			결정면적	금회시행		
유통 및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남상 지방상수도 (배수지) 건설공사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91번지	1,199㎡	1,199㎡	당초 : 2014.12.11 ~ 2016.12.31 변경 : 2014.12.11 ~ 2017.12.31	거창군 고시 2014-97호 (2014.08.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4.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와 수도사업소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및 수도사업소(☎055-940-8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9,620	1,199					
1	남상면 무촌리	산91	임	9,620	1,199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6-2	나주임씨도정 공파지하종중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1. 18.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89-12 외 13건(부여12건 폐지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0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89-12	2009-12-28	2017-01-18	1994년 거창읍시가지 간선 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2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5	2009-04-01	2017-01-1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7	2009-04-01	2017-01-1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9	2009-04-01	2017-01-1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5	2009-04-01	2017-01-1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2	2009-04-01	2017-01-1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4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2	2009-04-01	2017-01-18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이 반영된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34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303-47	2009-04-01	2017-01-18	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 영된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945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안길 49-6	2009-04-01	2017-01-18	성안이라는 옛지명이 반영 된 도로	
1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301-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505-85	2009-07-02	2017-01-18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 용	
1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1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6-1	2009-04-01	2017-01-18	장터가 있었다하여 붙여진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1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79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5길 79-93	2009-12-28	2017-01-18	동례길의 시점으로부터 다 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폐지

일련 번호	폐지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3길 83-3	2009-12-28	2017-01-18	건물철거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웅양로 1047-10	2009-12-28	2017-01-18	건물철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100세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이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거창군수

- 1. 사업명** : 건강100세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2. 집중접수 기간** : '17.1.13 ~ 1.20 ※ 선정인원 목표 달성 시까지 수시모집
- 3. 모집 인원** : 60명
- 4. 대 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우선순위 : ① 독거노인, ② 조손가정, ③ 노인부부
- 5.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복지지원담당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¹⁾ 그 밖의 관계인²⁾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대상자의 보호 동의 필요)

6.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기타 증빙서류

7. 선정절차



문의처 :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담당 ☎ 055-940-3143

- 붙임 : 1. 기준정보 1부.
2. 신청서식(별첨). 1부.

1)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2) 그 밖의 관계인 : 후견인

[붙임1] 건강100세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기준정보

항목	내 용																		
① 목적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다양한 여가지원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연령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거노인, ② 조손가정, ③ 노인부부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증진 서비스 및 역사문화 체험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학, 심리학, 상담학 등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레크레이션, 웃음코칭 등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2. 라이프코칭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라이프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3.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운동지도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정부 90% , 본인 10%) - (월 8회 제공) 월 140천원(정부 126천원, 본인 14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서비스 분류</th> <th>서비스 내용</th> <th>제공주기</th> <th>제공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여가증진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① 농업인을 위한 농부증 예방 웃음치료 프로그램 ②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운영 </td> <td>월 3회 회당 90분</td> <td rowspan="4">집합교육</td> </tr> <tr> <td>라이프코칭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세대의 자기개발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 ① 자기이해, 대화법, 자아인식, 대인관계 형성, 감정표현, 우울감 예방, 이미지 메이킹 등 ② 타인의 이해를 돕는 역할극 테라피 </td> <td>월 3회 회당 90분</td> </tr> <tr> <td>건강관리 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서비스 ① 맨손체조, 건강체조, 근력강화 스트레칭, 힐링요가 등 ② 치매예방, 우울증 예방 기법 체험 ③ 건강관리기법 및 건강관리 상식 등 제공 </td> <td>월 2회 회당 90분</td> </tr> <tr> <td>역사문화 체험서비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역사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①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참여 및 체험 활동 </td> <td>분기 1회 회당 480분(총2회)</td> <td>체험활동</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초기상담 후 제공계획서 계획 수립 ○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프로그램(여가증진, 라이프코칭,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 4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5단계 : 종결보고서 작성 후 이용자에게 배포, 고객만족도 확인 	서비스 분류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방법	여가증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① 농업인을 위한 농부증 예방 웃음치료 프로그램 ②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운영 	월 3회 회당 90분	집합교육	라이프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세대의 자기개발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 ① 자기이해, 대화법, 자아인식, 대인관계 형성, 감정표현, 우울감 예방, 이미지 메이킹 등 ② 타인의 이해를 돕는 역할극 테라피 	월 3회 회당 90분	건강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서비스 ① 맨손체조, 건강체조, 근력강화 스트레칭, 힐링요가 등 ② 치매예방, 우울증 예방 기법 체험 ③ 건강관리기법 및 건강관리 상식 등 제공 	월 2회 회당 90분	역사문화 체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역사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①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참여 및 체험 활동 	분기 1회 회당 480분(총2회)	체험활동
서비스 분류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제공방법																
여가증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① 농업인을 위한 농부증 예방 웃음치료 프로그램 ②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운영 	월 3회 회당 90분	집합교육																
라이프코칭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세대의 자기개발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 ① 자기이해, 대화법, 자아인식, 대인관계 형성, 감정표현, 우울감 예방, 이미지 메이킹 등 ② 타인의 이해를 돕는 역할극 테라피 	월 3회 회당 90분																	
건강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서비스 ① 맨손체조, 건강체조, 근력강화 스트레칭, 힐링요가 등 ② 치매예방, 우울증 예방 기법 체험 ③ 건강관리기법 및 건강관리 상식 등 제공 	월 2회 회당 90분																	
역사문화 체험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역사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①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참여 및 체험 활동 	분기 1회 회당 480분(총2회)		체험활동															
⑥ 집단규모	집단활동형, 제공인력 1인당 15인(1:15인)																		
⑦ 안전관리기준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관련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상,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신청인 ① 대상자 본인 ② 이동인 경우 : 부 또는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주민등록표상과 동일 기재 단) 배우자 주소가 상이할 경우 함께 기재	세대주와 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 의무자²⁾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³⁾	전화번호	
안 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 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포함)								
		영유아보육·유아학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비우체)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유의 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일, 기초노령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입니다.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거 해외체류기간이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중지 됩니다.
- 3-2.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나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3-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8.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부동의)
9.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0. 본인은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1.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 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바우처 카드(가상)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신청 카드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실물카드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종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방문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재활치료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역개발형		
	가상카드 (인증번호)	<input type="checkbox"/>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실물 카드 수령지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배우자)		※ 수령자가 보호자(배우자)인 경우,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역개발형)

가상 카드 (인증번호) 수령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 전화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대상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휴대전화 가입자의 범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따른 신청인의 범위와 동일 (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실물카드 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상기 본인(보호자)은 실물카드 발급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바우처 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 서비스 신청인(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대상자)이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② 실물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③ 보호자(법정대리인)와 카드 발급 신청인과의 관계는 행복e음 등을 통해 공부 상으로만 확인하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폐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거 창 군 수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제1항이 2015.11.11. 개정(2015.11.19. 시행)되어 지방공무원의 징계등 양정에 관한 기준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15.11.19.)이 제정됨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실효성이 상실되어 규칙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3. 폐지 규칙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의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 (1) 전 화 : 055-940-3172
- (2) F A X : 055-940-3169
- (3) E-Mail : misogirl@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거창군 공고 제72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1.11.>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20호, 2015.11.11.>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8.31.>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4호, 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0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8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개정2009.6.17) (개정 2010.9.10)

제 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개정 2010.9.10)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단서신설 2009.6.17)(개정 2010.9.17 단서삭제, 개정 2012.2.29 개정 2014.12.17.)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09.6.17)(개정 2010.9.10)(개정 2011.9.0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7)(개정 2010.9.10)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2 조의 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신설 2009.6.17)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9.10)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2014.12.17.)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2014.12.17.)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2014.12.17.)

제 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개정 2009.6.17)

-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6.17)(개정 2010.9.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6.17)(개정 2010.9.10)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개정 2009.6.17)(개정 2010.9.10)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개정 2010.9.10)

제 4조 (징계의 감경)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으면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9.6.17)(개정 2010.9.10)(개정 2011.9.06. 2014.5.07. 2014.12.17.)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9.6.17)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1986. 8. 18 규칙 제449호)(개정 2008.1.14, 2009.6.17. 2014.5.07)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9.6.17)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면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 규칙 제354호)(개정 2009.6.17)(개정 2010.9.10)

제 5조 (징계의 가중)

-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면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6.17)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두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6.17)(개정 2010.9.10)

제 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6.17)(개정 2010.9.10)
-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개정 2010.9.10)

제 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개정 2010.9.10)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에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개정 2009.6.17)(개정 2010.9.10, 2012.2.29)

② 제1항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의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88. 2. 3 규칙 제479호)(개정 2009.6.17)(개정 2010.9.10 2014.12.17.)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붙여야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6.17)

제 8조

(본조 삭제 1998. 4. 29 규칙816호)

제 9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대평리 일원에 계획된 「산업단지 연결도로(변전소~정장마을간)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의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1. .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산업단지 연결도로(변전소~정장마을간)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대평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개설 L=939.0m, B=12.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23-8번지 외 89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 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거창읍 정장리	1034-2	구	1656	3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	거창읍 정장리	1023-8	답	1616	1,493	심*주	거창읍 정장리 919				
3	거창읍 정장리	1028-14	잡	98	18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4	거창읍 정장리	1034-1	도	638	314	국	농림축산식품부				
5	거창읍 정장리	1028-15	잡	644	7	한국전력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6	거창읍 정장리	1022-4	답	954	543	정*상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430 부영A. 104-804				
7	거창읍 정장리	1022-1	답	2168	2,168	정*상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430 부영A. 104-804				
8	거창읍 정장리	1186	구	2117	343	국	농림축산식품부				
9	거창읍 정장리	1185	도	1020	233	국	국토교통부				
10	거창읍 정장리	992-46	과	2457	1,194	차*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90				
11	거창읍 정장리	산41-3	임	2619	543	김*수	중동1150				
12	거창읍 정장리	산41-9	임	269	269	김*현	서울 마포구 상수동 394 신구강변연가A.902				
13	거창읍 정장리	산41-5	임	773	103	김*현	서울 마포구 상수동 394 신구강변연가A.902				
14	거창읍 정장리	992-28	과	1475	1,139	김*현	서울 마포구 상수동 394 신구강변연가A.902				
15	거창읍 정장리	992-32	목	262	15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거창읍 정장리	992-43	목	22	22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	거창읍 정장리	992-35	과	28	28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거창읍 정장리	992-44	과	136	136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거창읍 정장리	992-42	과	1967	1,967	신*숙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3				
20	거창읍 정장리	992-9	목	14832	565	이*술 외 1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9길 7				
21	거창읍 정장리	992-10	전	298	298	신*숙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3				
22	거창읍 정장리	산33-1	임	1091	1,013	이*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99				
23	거창읍 정장리	산32-7	임	4165	2	경주최씨 관가정공 파운정종증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431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4	거창읍 정장리	992-4	전	291	287	이*훈	장팔리				
25	거창읍 정장리	937-11	전	8147	637	송*식 외 2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21, 601호 (신암동,리더스빌)				
26	거창읍 정장리	992-17	도	152	152	김*한					
27	거창읍 정장리	992-3	전	780	516	송*식 외 2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21,601호 (신암동,리더스빌)				
28	거창읍 정장리	937-8	전	235	59	송*식 외 2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21,601호 (신암동,리더스빌)				
29	거창읍 정장리	937-2	전	417	290	송*식 외 2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21,601호 (신암동,리더스빌)				
30	거창읍 정장리	937-1	전	8000	796	송*식 외 2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21,601호 (신암동,리더스빌)				
31	거창읍 정장리	산36-1	임	2876	903	송*식 외 2인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2길 21,601호 (신암동,리더스빌)				
32	거창읍 정장리	1168	구	1365	213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거창읍 정장리	942-1	전	14	1	제*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06				
34	거창읍 정장리	940-1	전	626	606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35	거창읍 정장리	941-2	도	126	104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36	거창읍 정장리	산25-3	임	375	196	정장리마 을회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정장리 785-1				
37	거창읍 정장리	941-4	전	917	742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38	거창읍 정장리	1023-1	답	1302	394	심*주	거창읍 정장리 919				
39	거창읍 정장리	1023-3	답	1554	85	유*순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정장리 768-2				
40	거창읍 정장리	1022-2	답	1463	1,258	유*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2길 11				
41	거창읍 정장리	1022-5	답	1225	70	공	경상남도				
42	거창읍 정장리	1022-3	답	2526	1,507	공*술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정장리 780-2				
43	거창읍 정장리	992-34	과	702	7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 일동 487				
44	거창읍 정장리	992-22	과	13065	1,253	신*숙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5	거창읍 정장리	940	전	197	165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46	거창읍 정장리	939	전	291	11	양*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4-9				
47	거창읍 정장리	929-14	대	140	17	정장리마 을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48	거창읍 정장리	산25-4	임	22	10	공	거창군				
49	거창읍 정장리	929-5	대	212	212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50	거창읍 정장리	1175	도	89	13	국	국토교통부				
51	거창읍 정장리	산22-3	임	397	201	장*수 외 4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5				
52	거창읍 정장리	산24	임	694	169	장*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2길 16-16,202호(봉산동)				
53	거창읍 정장리	산23	임	198	198	전*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297-3 지산4단지A.401동 1112호				
54	거창읍 정장리	929-16	전	70	70	양*희 외 1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3길 11				
55	거창읍 정장리	918-2	과	5719	1,510	허*외 5명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56	거창읍 정장리	산147	도	260	90	국	국토교통부				
57	거창읍 정장리	929-21	대	4	1	공	거창군				
58	거창읍 정장리	929-20	대	5	5	공	거창군				
59	거창읍 정장리	929-11	대	220	210	정장리마 을회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정장리 785-1				
60	거창읍 정장리	929-3	대	314	48	정장리마 을회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정장리 785-1				
61	거창읍 정장리	929-8	전	125	106	양*희 외 1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3길 11				
62	거창읍 정장리	929-2	대	287	8	정장리마 을회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정장리 785-1				
63	거창읍 정장리	929-1	전	135	52	양*희 외 1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3길 11				
64	거창읍 대평리	1428-3	전	357	308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65	거창읍 대평리	1427-2	도	56	58	김*술	하동				
66	거창읍 대평리	1427-4	전	49	49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67	거창읍 대평리	1430-1	전	129	65	허*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54-4 신흥A, 101동 402호				
68	거창읍 대평리	1426-3	전	11	11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69	거창읍 대평리	1426-2	도	10	10	오*월					
70	거창읍 대평리	1425-2	전	89	76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71	거창읍 대평리	1424-3	도	40	40	김*문	거창읍 중동 1293				
72	거창읍 대평리	1424-4	전	323	254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73	거창읍 대평리	1422-3	답	504	389	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74	거창읍 대평리	1422-46	과	382	306	최*대	거창읍 김천동 280-1				
75	거창읍 대평리	1421-2	차	413	102	박*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3길 23,403호(들꽃마을)				
76	거창읍 대평리	1421-3	전	126	93	박*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3길 23,403호(들꽃마을)				
77	거창읍 대평리	산15-5	임	68	31	박*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3길 23,403호(들꽃마을)				
78	거창읍 대평리	1421-5	차	18	18	박*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3길 23,403호(들꽃마을)				
79	거창읍 대평리	산15-1	도	1289	132	공	거창군				
80	거창읍 대평리	1427-5	창	366	366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81	거창읍 대평리	1427-1	창	452	108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82	거창읍 대평리	1426-4	창	366	366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83	거창읍 대평리	1426-1	창	402	115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84	거창읍 대평리	1425-3	대	252	252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85	거창읍 대평리	1425-1	대	353	147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86	거창읍 대평리	1422-6	도	83	15	김*술					
87	거창읍 대평리	1422-4	전	169	124	허*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8				
88	거창읍 대평리	1422-47	과	344	127	최*대	거창읍 김천동 280-1				
89	거창읍 대평리	1422-33	답	37	5	공	거창군				
90	거창읍 대평리	1422	도	245	19	국	국도교통부				

○ 보상조서(지장물)

순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1022-2	비닐하우스		732.5	m ²		유*균	
1	"	"	포도나무	캠벨	1.0	식			
1	"	"	유류탱크		1.0	식			
2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1022-1	비닐하우스		877.0	m ²		정*영	
2	"	"	포도나무	캠벨	1.0	식			
3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992-28	마당	콘크리트	259.0	m ²			
3	"	"	옹벽		154.0	m			
3	"	"	컨테이너		1.0	동			
3	"	"	웬스	스텐	10.0	m			
4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941-1	주택	12.5x5.8 + 3.3x1.8	블록 기와	78.4	m ²		최*근
4			축사	11.1x8.7	블록 스레이트	96.6	m ²		최*근
4	"	"	화장실	1.7x2.0	블록 스레이트	3.4	m ²		
4	"	"	마당		콘크리트	91.0	m ²		
4	"	"	가추		조립식	33.7	m ²		
4	"	"	담장	2.5x12.5	블록	31.3	m ²		
4	"	"	담장	1.4x3.1	블록	4.3	m ²		
4	"	"	전기			1.0	식		
4	"	"	상수			1.0	식		
4	"	"	에어컨			1.0	식		
4	"	"	보일러			1.0	식		
4	"	"	전화			1.0	식		
4	"	"	가추	1.5x12.5	스레이트	18.8	m ²		
4	"	"	포도나무	캠벨	1.0	식			
5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929-11	주택	9.0x7.3	조립식	65.7	m ²		임*식
5	"	"	주택	3.4x6.4	블록 스레이트	21.8	m ²		

5	"	"	창고	2.4x1.2	블록 스레트	2.9	m ²			
5	"	"	축사	2.4x9.0	블록 스레트	21.6	m ²			
5	"	"	창고	1.2x5.5	조립식	6.6	m ²			
5	"	"	가추	6.4x2.1+ 9.0x0.7	철골 캐노피	19.7	m ²			
5	"	"	담장	1.6x8.3	블록	13.3	m ²			
5	"	"	담장	1.6x6.1	블록	9.8	m ²			
5	"	"	담장	2.5x12.5	블록	31.3	m ²			
5	"	"	지하수			1.0	식			
5	"	"	전기			1.0	식			
5	"	"	위성TV			1.0	식			
5	"	"	감나무			1.0	식			
5	"	"	보일러			1.0	식			
5	"	"	대문		철제	1.0	식			
6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929-8	주택	7.9x4.5	블록 함석	37.9	m ²		박*자	
6	"	"	주택	2.0x7.3	블록 기와	14.6	m ²			
6	"	"	창고	2.8x1.5	블록 스레트	4.2	m ²			
6	"	"	축사	4.0x1.2	블록 스레트	4.8	m ²			
6	"	"	마당		콘크 리트	28.3	m ²			
6	"	"	가추	4.0x1.3	스레트	5.2	m ²			
6	"	"	전기			1.0	식			
6	"	"	상수			1.0	식			
6	"	"	FRP			1.0	식			
6	"	"	대문			1.0	식			
7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산24	축사	8.0x3.0	조립식	24.0	m ²			
8	거창군거창읍 정장리	산25-3	주택	(11.8+ 16. 2)x4÷2	블록 함석	56.0	m ²		황*자	942-8 962
8	"	"	화장실	2.0x1.9	블록 스레트	3.8	m ²			
8	"	"	창고	2.9x4.2÷ 2	블록 슬라브	6.1	m ²			

8	"	"	마당	콘크리트	66.6	m ²			
8	"	"	가추	(17.3+ 16.2)x1.0÷2 스레트	16.8	m ²			
8	"	"	담장	1.8x3.9 블록	7.0	m ²			
8	"	"	담장	1.8x2.4 블록	4.3	m ²			
8	"	"	담장	1.8x9.0 블록	16.2	m ²			
8	"	"	상수		1.0	식			
8	"	"	에어컨		1.0	식			
8	"	"	보일러		1.0	식			
8	"	"	전화		1.0	식			
8	"	"	대문	철제	1.0	식			
9	거창군거창읍 대평리	1422-4 6	주택	8.0x3.5 블록 함석	28.0	m ²		최*대	
9	"	"	주택	(4.6+ 5.4) x3.6÷2 블록 스레트	18.0	m ²			
9	"	"	창고	8.5x5.0 판넬	42.5	m ²			
9	"	"	화장실	2.0x1.0 블록 스레트	2.0	m ²			
9	"	"	가추	9.0x4.5- 8.0x3.5 함석	12.5	m ²			
9	"	"	축사	12.0x5.1 목조 스레트	61.2	m ²			
9	"	"	축사	20.8x15.9 -6.6x6.6 목조 스레트	287.2	m ²			
9	"	"	축사	6.6x6.6 블록 스레트	43.6	m ²			
9	"	"	비닐하우스	11.6x4.8	55.7	m ²			
9	"	"	축사	3.3x3.8 목조 스레트	12.5	m ²			
10	거창군거창읍 대평리	1422-3	1층,주택	15.0x7.9 블록 슬라브	118.5	m ²		최*대	
10	"	"	2층,주택	13.8x7.9 블록 슬라브	109.0	m ²			
10	"	"	1-1계단	1.2x7.9 콘크리트	9.5	m ²			
10	"	"	2-1계단	1.2x7.9 콘크리트	9.5	m ²			
10	"	"	심야전기		1.0	식			
10	"	"	전기		1.0	식			

10	"	"	에어컨		1.0	식			
10	"	"	보일러		1.0	식			
10	"	"	전화		1.0	식			
10	"	"	지하수		1.0	식			
10	"	"	상수도		1.0	식			
11	거창군거창읍 대평리	1425-1	주택	8.7x9.6+ 7.4x3.4	블록 슬라브	108.7	m ²		
11	"	"	창고	5.2x2.9+ 2.1x6.1	블록 스레트	27.9	m ²		
11	"	"	계단	1.0x1.3	콘크 리트	1.3	m ²		
11	"	"	심야전기			1.0	식		
11	"	"	전기			1.0	식		
11	"	"	에어컨			1.0	식		
11	"	"	주택	17.7x6.1 + 5.3x4.9	블록 기와	133.9	m ²		
11	"	"	가추	17.7x0.5	조립	8.8	m ²		
11	"	"	마당		콘크 리트	60.0	m ²		
12	거창군거창읍 대평리	1426-4	주택	8.2x9.0+ 2.2x2.5	블록 스레트	79.3	m ²		
12	"	"	화장실	1.6x1.6	블록 스레트	2.6	m ²		
12	"	"	보일러			1.0	식		
12	"	"	전기			1.0	식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1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거창군 고시 제2015-49호(2015.04.3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1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17. 01. 17.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0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군계획시설: 교통시설	마상리 덕성약국 인근(소2-191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가조면 마상리 301-4번지 일원	소로	2	191	95.3	8.0	803	경고115호 (79.05.24)	2015.05 ~2016.12.01

3.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4.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필증

귀하(중)께서 제출하신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신청인	성명	거창군수	법인등록번호	611-83-00012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준 공 내 용						
사업명칭	마상리 덕성약국 인근(소2-191호선)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사업목적	군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긴급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사업위치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01-4번지 일원	사업량	L=95.3m, B=8.0m			
시행방법	신청인 직영	시행기간	2015.05 ~ 2016.12.01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대	구	답	도	합계
	면적	803	-	-	-	803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도로				계
	면적	803				803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개요	803				
소요사업비	647백만원		공사완료일	2016. 12. 01		

2017년 01월 17일
거창군수